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62
----------	------

발의연월일 : 2022. 11. 21.

발 의 자 : 금광연 의원

1. 제안 이유

공동주택 놀이터에 대한 관리비용 지원대상을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지로 변경해 어린이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의 놀이터를 예외적인 지원대상으로 추가(제3조제2항)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하남시조례 제 호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의 놀이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지원범위) ① (생 략)</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일부터 1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단지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1.·2. (생 략)</p> <p><u><신 설></u></p> <p>③ ~ ⑦ (생 략)</p>	<p>제3조(지원범위)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u>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의 놀이터</u></p> <p>③ ~ ⑦ (현행과 같음)</p>